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르 오네뜨 입주자모집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03. 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남구 봉선로 르 오네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운영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 관람과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봉선로 르 오네뜨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http://르오네뜨.com>)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임.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함. (미성년자 동반입장 불가하고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측정)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전신소독기 등)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함.

- 분양 상담전화(☎062-385-4861), 공식홈페이지 (<http://르오네뜨.com>)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2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남구)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 | | 85초과 | 3년 |
| | 그 외 | 85이하 | 3년 |
| | | 85초과 | 1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3.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156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 (2020.03.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이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광주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5 오네뜨 인터넷 홈페이지 (<http://로오네뜨.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충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가점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됩니다.(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수의 30%를 가점제, 일반공급수의 7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제출된 자격확인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여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청약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법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구(광주광역시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남구)은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을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분양사무소(본관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로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공급계약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급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남구 봉선로 55 오네뜨 홈페이지(<http://runeo.net.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 일반1순위(해당지역) | 일반1순위(기타지역)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자격확인 서류접수 기간(예비입주자 포함)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1년 04월 05일(월) | 2021년 04월 06일(화) | 2021년 04월 07일(수) | 2021년 04월 08일(목) | 2021년 04월 14일(수) | 2021년 04월 15일(목) ~2021년 04월 21일(수) | 2021년 04월 26일(월) ~2021년 04월 28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견본주택 (10:00~ 16:00) | 견본주택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 으로 진행될 수 있음 (10:00 ~ 16: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p>*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방문 검수 : 자격확인 서류(당첨 구분에 따른)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전체) ■ 구비서류는 당사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검수접수 과정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견본주택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 - 11961 호(2021.03.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055-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20층 2개동 총 70세대[특별공급 9세대(다자녀가구 7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II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일반공급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다자녀 가구 | 노부모 부양 | 계 | | |
| 민영 주택 | 2021000095 | 01 | 168.9015A | 168A | 168.9015 | 30.9805 | 199.8820 | 120.6328 | 320.5148 | 83.0000 | 34 | 3 | 1 | 4 | 30 | 2 |
| | | 02 | 168.9015B | 168B | 168.9015 | 43.0230 | 211.9245 | 120.6328 | 332.5573 | 83.0000 | 19 | 2 | 1 | 3 | 16 | 1 |
| | | 03 | 168.9015C | 168C | 168.9015 | 43.0645 | 211.9660 | 120.6328 | 332.5988 | 83.0000 | 16 | 2 | 0 | 2 | 14 | 1 |
| | | 04 | 219.3276 | 219 | 219.3276 | 46.2726 | 265.6002 | 156.6483 | 422.2485 | 108.0000 | 1 | 0 | 0 | 0 | 1 | 0 |

| | | | | | | | | |
|--|--|-----|----|---|---|---|----|---|
| | | 합 계 | 70 | 7 | 2 | 9 | 61 | 4 |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2) × 0.3025 또는 공급면적(m^2)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2 /원/VAT포함)

| 주택형 | 동별 (라인) | 공급 세대 | 층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계약시 (5%) | 계약후 30일 이내(5%) | 2021.06.21 | 2021.09.23 | 2021.12.21 | 2022.03.21 | 2022.06.21 | 2022.09.21 | |
| 168.9015A | 102동 1~2라인 | 34 | 1 | 2 | 400,300,000 | 550,000,000 | 55,000,000 | 1,005,300,000 | 50,265,000 | 50,265,000 | 100,530,000 | 100,530,000 | 100,530,000 | 100,530,000 | 100,530,000 | 100,530,000 | 301,590,000 |
| | | | 2 | 2 | 400,300,000 | 580,000,000 | 58,000,000 | 1,038,300,000 | 51,915,000 | 51,915,000 | 103,830,000 | 103,830,000 | 103,830,000 | 103,830,000 | 103,830,000 | 103,830,000 | 311,490,000 |
| | | | 3 | 2 | 400,300,000 | 590,000,000 | 59,000,000 | 1,049,300,000 | 52,465,000 | 52,465,000 | 104,930,000 | 104,930,000 | 104,930,000 | 104,930,000 | 104,930,000 | 104,930,000 | 314,790,000 |
| | | | 4 | 2 | 400,300,000 | 610,000,000 | 61,000,000 | 1,071,300,000 | 53,565,000 | 53,565,000 | 107,130,000 | 107,130,000 | 107,130,000 | 107,130,000 | 107,130,000 | 107,130,000 | 321,390,000 |
| | | | 5~17 | 26 | 400,300,000 | 630,000,000 | 63,000,000 | 1,093,300,000 | 54,665,000 | 54,665,000 | 109,330,000 | 109,330,000 | 109,330,000 | 109,330,000 | 109,330,000 | 109,330,000 | 327,990,000 |
| 168.9015B | 101동 1라인 | 19 | 2 | 1 | 400,300,000 | 620,000,000 | 62,000,000 | 1,082,300,000 | 54,115,000 | 54,115,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324,690,000 |
| | | | 3 | 1 | 400,300,000 | 650,000,000 | 65,000,000 | 1,115,300,000 | 55,765,000 | 55,765,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334,590,000 |
| | | | 4 | 1 | 400,300,000 | 670,000,000 | 67,000,000 | 1,137,300,000 | 56,865,000 | 56,865,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341,190,000 |
| | | | 5~20 | 16 | 400,300,000 | 690,000,000 | 69,000,000 | 1,159,300,000 | 57,965,000 | 57,965,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347,790,000 |
| 168.9015C | 101동 2라인 | 16 | 2 | 1 | 400,300,000 | 620,000,000 | 62,000,000 | 1,082,300,000 | 54,115,000 | 54,115,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108,230,000 | 324,690,000 |
| | | | 3 | 1 | 400,300,000 | 650,000,000 | 65,000,000 | 1,115,300,000 | 55,765,000 | 55,765,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111,530,000 | 334,590,000 |
| | | | 4 | 1 | 400,300,000 | 670,000,000 | 67,000,000 | 1,137,300,000 | 56,865,000 | 56,865,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113,730,000 | 341,190,000 |
| | | | 5~17 | 13 | 400,300,000 | 690,000,000 | 69,000,000 | 1,159,300,000 | 57,965,000 | 57,965,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115,930,000 | 347,790,000 |
| 219.3276 | 102동 | 1 | 18 | 1 | 519,700,000 | 850,000,000 | 85,000,000 | 1,454,700,000 | 72,735,000 | 72,735,000 | 145,470,000 | 145,470,000 | 145,470,000 | 145,470,000 | 145,470,000 | 145,470,000 | 436,410,000 |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주택은 168.9015A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168.9015B타입과 168.9015C타입은 168.9015A타입과 동일한 구조임, 단, 168.9015B타입 침실4 창호 일부는 벽체시공 됨.), 미건립 타입 219.3276은 본주택 내 VR모델링 및 건축허가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수별로 면적 및 구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 및 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총·호수를 적용하여 총·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총수에 해당하는 총·호수를 고려하여 공급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본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공급계약자가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계약자는 공급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주택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후불제 적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 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 | | | |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168.9015A | 168.9015B | 168.9015C | 219.3276 |
| 약식표기 | 168A | 168B | 168C | 219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 분 | 168A | 168B | 168C | 219 | 합 계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 | 2 | 2 | - | 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 1 | - | - | 2 |
| 합 계 | 4 | 3 | 2 | - | 9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_광주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_전라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m²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m²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m²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_광주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_전라남도 | 전용면적 85m 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m 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m 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_광주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_전라남도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m 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m 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m 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상 선정함. <p>※ 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함. 단,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주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 | | | | | | | | | | | | | |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3.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출산, 입양자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 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3.24. 현재 해당지역(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계 | 100 | 기준 | 점수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 시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현장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단,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시 만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함.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
| 신청 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3.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등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급신청자 중 동일 자격 또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제2019-156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p>※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주택형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제2019-156호)에 의거하여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85m ²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m²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자 |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_광주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_전라남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p>※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p>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정 산정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3년 이상 계속 부양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2)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이 필요 시 : 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총점 | 84 | | | | | |
|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2021.04.05.(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 장애인에 함함)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지역) | 2021.04.06.(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가입은행 창구 (고령자, 장애인에 함함) |
| | 1순위(기타지역) | 2021.04.07.(수) 08:00~17:30 | | |
| | 2순위 | 2021.04.08.(목) 08: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 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전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0 |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3년 전(2018.03.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0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0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 | | | |
|-----------------------|---|------------------------|--------------|--|
| 다자녀 특별 공급 | 0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본인 작성 | 견본주택 비치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0 | 기본증명서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비치 |
| | 0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3년 전(2018.03.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0 | 가산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작성 | 견본주택 비치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상세"로 발급)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노부모 특공 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기록대조일을 3년 전(2018.03.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0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자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1년 전(2020.03.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0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인감증명 방식 |
| | | |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
|---|-------------|-----|--|--|--|
| | | | |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0 | 위임장 | 본인 |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 0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신분증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은행 방문접수 시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등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은행 방문접수 시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 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 확인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 해당 주택의 공급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V

당첨자 발표 및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자격 확인서류 중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주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자격 확인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자격확인 서류 접수 기간(예비입주자 포함)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4.14(수)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1.04.15(목)~2021.04.21(수) (10:00~16:00) [7일간] 장소 - 봉선로 르 오네뜨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1.04.26(월)~2021.04.28(수) (10:00~16:00) [3일간] 장소 - 봉선로 르 오네뜨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0-12]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르오네뜨.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전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2021. 04. 14(수) ~ 2021. 04. 23(토) (10일간) |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 04. 1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 또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p>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준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p>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 공급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및 전라남도 거주 공급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공급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해당 자격확인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공급신청자의 척도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는 제출기간 이내 당사 견본주택으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예비입주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계약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의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봉선로 르 오네뜨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 분 | 일정 및 장소 |
|--------------|--|
| 자격확인 서류 접수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자(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접수기간 : 2021.04.15.(목) ~ 2021.04.21.(수) 10:00 ~ 16:00까지(7일간) <p>※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접수기간에 견본주택 내방 시 사전예약 신청이 필수이며 사전예약 신청 일정을 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 접수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선로 29 오네뜨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0-12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 확인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자격확인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기간도 일반공급 당첨자와 동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기간 내 자격 확인서류를 접수하지 못 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2021.04.15.(목) ~ 04.21(수) / 7일간 10:00 ~ 16:00]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3년 전(2018.03.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O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 O | | 장애인등록증 / 등본 | 해당자 | •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특별공급 추가서류 | O |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 |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서류 해당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참조] |
|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3년 전(2018.03.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자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1년 전(2020.03.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당사 요청 서류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공동(개별)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포함하여 발부]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O | | | |
| | O | | | |
| | O | | | |
| | O | | 해당 구비서류 | • 청약자격 이상에 따른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 2. 수도권 외 6개월 / 3.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합니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VII

계약 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 2021.04.26.(월) ~ 2021.04.28.(수) 3일간, 10:00 ~ 16:00 | ※ 봉선로 25 오네뜨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0-12 ※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자별 시간대별 내방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필히 사전예약 후 해당 일시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자금조달계획서(견본주택 비치) |
| 제3자 계약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계약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항목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공급대금 | 광주은행 | 1107-021-102560 |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명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명 → '1011502홍길동' / 102동 1702호 계약자명 → '1021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정당계약일 이후 또는 당사가 정한 환불지급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자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제출된 자격확인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청약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엘리베이터 홀, 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부도·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용승인 전 일괄 통보 하오니, 이로 인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광주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0.03.13.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가점제(30%), 추첨제(7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축소될 경우 중도금 대출액의 나머지는 잔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변경될 경우 사업주체 측에서 별도로 통보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로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이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회차 및 일자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는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공급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실, 휴트니스 센터 외), 주민운동시설, 개인 창고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VIII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및 납부 방법

(단위:m²/원/VAT포함)

| 주택형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168A·B·C | 40,000,000 | 4,000,000 | 36,000,000 | |
| 219 | 60,000,000 | 6,000,000 | 54,000,000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항목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170722 |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잔금 일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동주택 공급금액에는 미포함 되어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급계약서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공급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 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시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공급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 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관계법령의 위반 책임 및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비확장 세대)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비확장 세대)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비확장 세대)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비확장 세대)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천장형 에어컨

(단위:m'/월/VAT포함)

| 주택형 | 설치개소 | 제조사명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168A·B·C | 6개소 | 삼성전자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10,000,000 | 1,000,000 | 9,000,000 | |
| 219 | 7개소 | 삼성전자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서재 / 가족실 | 12,000,000 | 1,200,000 | 10,800,000 | |

- 천장형 에어컨 선택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천장형 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장형 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 견본주택 설치위치 및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제품 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텠드형 및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임.
- 천장형 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천장형 에어컨 공사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제시됨.
- 천장형 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 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 (천장형 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음.
- 천장형 에어컨은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어할 수 없음.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정의 크기 및 설치 부위의 천장 위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 선택시 천장형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제품 제조사의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주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가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천장형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 할 수 있음
- 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 함. 시공 상의 이유로 지상층 골조작업 시작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천장형 에어컨 신청세대는 에어컨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함

• 빌트인 가전

(단위:m'/원/VAT포함)

| 주택형 | 품명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제조사 | 비고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 전세대 | LG Objet collection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 BOC1K, BOC1F, BOC1L | 5,000,000 | 500,000 | 4,500,000 | LG전자 | |
| | 스타일리, 워시타워 (세탁, 건조) | S3HFB / W16GE | 6,000,000 | 600,000 | 5,400,000 | LG전자 | |

- 빌트인 가전은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견본주택은 상기 빌트인 가전이 추가 선택 품목으로 설치된 상태임.
- 빌트인 가전 미선택시 공간 확보를 위해 주방가구의 변동이 있어 견본주택의 형태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빌트인 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니,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기에 따른 제품의 단종 등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및 복도 이미지월 및 거실장

(단위:m'/원/VAT포함)

| 주택형 | 구성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168A·B·C | 포세린타일(스페인산) 450*1200 10T, 거실장 3000*350*180 | 12,000,000 | 1,200,000 | 10,800,000 | ドレス룸 불박이장 제공 팬트리 불박이장 제공 |
| 219 | 포세린타일(스페인산) 450*1200 10T, 거실장 3000*350*180 | 27,000,000 | 2,700,000 | 24,300,000 | |

-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건본주택은 상기 품목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설치된 상태임.
- 상기 옵션의 미선택 및 자재의 형태는 건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 시공시 자재 수급의 이유로 등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옵션의 타일나누기, 간접 등의 형태, 하자방지 및 유지관리향상 등의 이유로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덕션 (하향식 후드 일체형) 및 전동 브라인더

(단위:m'/원/VAT포함)

| 주택형 | 구성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168A·B·C | 인덕션[하향식 후드 일체형] 브라인더[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주방 / 보조주방(수동) / 욕실1(수동)] | 20,000,000 | 2,000,000 | 18,000,000 | |
| 219 | 인덕션[하향식 후드 일체형] 브라인더[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서재 / 가족실 / 주방 / 드레스룸 / 욕실1(수동) / 욕실3(수동) / 테라스1 / 테라스5] | 30,000,000 | 3,000,000 | 27,000,000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단위:m'/원/VAT포함)

| 주택형 | 구성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168A·B·C | 천장형 에어컨 (6개소), LG Objet collection, 스타일러, 워시타워, 거실아트월, 복도 이미지월, 거실장, 인덕션(하향식 후드 일체형), 전동 브라인더 (8개소) | 53,000,000 | 5,300,000 | 47,700,000 | |
| 219 | 천장형 에어컨 (7개소), LG Objet collection, 스타일러, 워시타워, 거실아트월, 복도 이미지월, 거실장, 인덕션(하향식 후드 일체형), 전동 브라인더 (12개소) | 80,000,000 | 8,000,000 | 72,000,000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항목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170722 |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

-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가전, 마감 등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의 납부일정은 추후 별도 공급계약 시 안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내용 및 계약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변경 요청 할 수 없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IX

유의 사항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지 명칭은 "봉선로 르 오네뜨" 잠정 결정 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돋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남해종합개발㈜, 남해종합건설㈜가 시공 예정이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봉선로 르 오네뜨 홈페이지(<http://르오네뜨.com>)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봉선로 르 오네뜨 홈페이지(<http://르오네뜨.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돋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충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관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봉선로 르 오네뜨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르오네뜨.com>)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시점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공사의 디자인가이드 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동등 수준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차도, 하천공원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제석초등학교 입. (단,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및 학생수 증감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여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 초등(중)학교 :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www.seobu.gen.go.kr)] 문의
- 고등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gen.go.kr)] 문의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부 여건

-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공동주택 주차장이 혼용되어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 및 지하1층 주차장 주행로 유효 높이는 2.3m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 주행로 유효 높이는 2.3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색체,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변경 동의서의 미 협조 시 외관 개선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 등)이 상가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위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폐기물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1층 동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설비기,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동의 지하1층에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및 주동 1층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ガ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성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밭코니 전·후면 하부에 훈름,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상업지역에 계획된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内外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구성된 아파트로서 협소한 부지 특성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층의 주동출입구는 주차장 주차램프와 인접하여 소음, 매연 등의 의한 환경권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각 동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와 경비실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 근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선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훈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헬름 D/A 등의 지상 둘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훈룸 또는 제연헬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 애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훈,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최종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훈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1층 101동 북측에 위치하며, 아파트 주차장인 지하주차장 주차램프는 102동 1층 코어측에 위치합니다. 차량통행로와 코어가 인접하여 소음 및 매연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저층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세대 하부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며,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101동에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충분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여,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층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어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을 시공 할 수 있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별도 욕상부에는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 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지하1층 참고, 제연 험률 이동통신용 중계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되며,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지상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2동 1~2호 라인의 저층부는 기존 주거시설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냄새,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주동 창호는 커튼월창으로 별도의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형태 및 재질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창 제외: 별도 난간 설치)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냉각수 배관은 천장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호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충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침실3(벽걸이형), 침실4(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인 천장형 에어컨을 선택시 침실1, 침실3, 침실4 및 거실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설치하지 않습니다.(168A,B,C)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침실2(벽걸이형), 침실3(벽걸이형), 가족실(벽걸이형), 서재(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 주방(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인 천장형에어컨을 선택시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서재, 거실 및 주방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설치하지 않습니다.(219)
- 3구 인덕션은 기본 제공으로 가스쿡탑의 사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 후 별도로 주방까지 가스배관 작업을 계약자 책임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4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
- 동일 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68A,B,C타입은 욕실2 및 욕실3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219 타입은 욕실2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예 :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 시공 등)
- 세대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등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호통 등을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녀방 가구는 각 평형별 크기가 상이하므로 견본세대 또는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거실, 침실 급기 / 복도 배기)용 전열교환기는 주방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급배기 디퓨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전 평형 욕실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됩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 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1,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상이하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각 실의 용도에 맞추어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는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등의 배관 및 덕트류 설치를 위해 커튼박스의 규격이나 설치 길이 등이 견본주택 대비 일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흠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액세서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내부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한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설비,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타일 요청으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을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 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에 따라 발코니 천정(또는 가림판)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천정의 높이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실외기설비, 발코니 등에 걸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거울절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카리성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화장실 천정에 매립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 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각종 안내표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기고지된 안내표지에 따라 변경 시공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비포함 사항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동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돋기 위한 표면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의 재료는 블록 포장으로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페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168A타입 유니트가 건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팜플렛 및 모형,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증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 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활용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진동,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성되어지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1층에 위치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IX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 구 분 | 적용여부 | 비 고 |
|---------------|------|---|
| 고기밀창호 | 적용 | 직접외기창, 세대현관문, 거실방화문은 기밀성능 1등급적용 간접외기 세대현관문 기밀성능 2등급 이상적용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수변전, 급수펌프, 보일러 고효율기자재적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세대 및 옥외공간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단위세대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내 절수형 수전설치 |

※ 친환경주택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 단열 조치 준수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 | 고효율 전동기 |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
| | 고효율 난방, 금탕·급수펌프 |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
| | 절수형설비 설치 |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
|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 |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원/VAT포함)

| 구분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
|-------------|---------------|------------------|------------------|
| 회사명 | (주)케이씨엠엔지니어링 | (주)미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미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감리금액(VAT포함) | ₩640,920,170원 | ₩27,500,000원 | ₩38,500,000원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5612021-101-0000600 호 | 54,948,880,000 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체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체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체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체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같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체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체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 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
|--------|------------------------------|------------------------|------------------------------|
| 상 호 |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 남해종합개발 주식회사 |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42 (광산동, 안산빌딩4층)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69-2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42 (광산동, 안산빌딩4층) |
| 법인등록번호 | 110111-0647870 | 205211-0045458 | 110111-0647870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 : 봉선로 55 오네뜨 홈페이지(<http://르오네뜨.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0-12 / 062-385-486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